## 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-369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8호에 따른 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 중 일부를 개정·고시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3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#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사유

- 가.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(기존 122항목)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·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(6개 항목)을 변경하고자 함
- 나.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신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 시험방법을 제·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

#### 2. 개정내용

가.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[별표]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6개 항목 일부개정

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

제22항 유전독성 시험(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 시험)

제35항 피부과민성 시험(국소림프절 시험, LLNA: BrdU-ELISA)

제58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돌연변이분석법

제61항 안드로겐수용체 전사활성 시험

제63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 시험(토끼각막세포주 시험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, 기관 및 단체(협회)는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서 제출방법 :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(032-560-7169), 모사전송(032-560-2037), 전자우편 eeasy@korea.kr

### 4. 그 밖의 사항

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) 내 「법령정보 → 행정예고」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